

**아주대학교 기숙사식당 1층 집단급식소(주방)
개선공사(기계) / 과업지시서**



2022. 11.

아주대학교

1. 공사명 : 아주대학교 기숙사식당 1층 집단급식소(주방) 개선공사(기계)

2.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식당동 1층 주방

나. 공사내용

- 1) 장비설치공사 : 온수보일러 1대, 배기팬 1대 제작 및 납품, 설치
- 2) 급수급탕 배관공사 : 1층 메인입상관 분기 ~ 각 주방기기별 공급배관 설치
- 3) 환기덕트 설치공사 : 1층 옥상배기팬 ~ 각 주방기기별 배기후드 연결
- 4) 가스배관 설치공사 : 1층 외부 가스메인관 ~ 각 주방기기별 도시가스배관 연결,
도시가스공사관련 인허가 업무 대행

3. 공사기간 : 2022.11.28. ~ 2022.12.11. 까지 / 약 2주

4. 공사 일반사항

가. 제작 및 설치 승인

- 1)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시 후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발주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나. 사용자재 및 기기

-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 및 기기는 현장에 반입 전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하여 감독자의 확인 입회하에 시공한다. 이때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 2) 모든 자재는 KS 제품을 우선으로 사용하고, 시공 전 반드시 자재승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해야 한다.

다. 시공 유의사항

- 1) 모든 공사는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기준에 따른다.
-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충분한 협의 후 작업 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공정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며 작업 완료 후 청소 및 정리정돈을 철저히 시행한다.
- 3) 코아 작업 및 설치에 관련된 일체 행위에 따른 전기, 통신, 방송, 인터넷 전선에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이상 발견 시 발주처 담당에게 연락을 취한다.
- 4) 설치 검수시, 설치된 물품의 결함이 있을 경우, 계약자는 즉시 무상으로 재설치하여야 한다.
- 5) 기존 설치된 시설물의 임의적 변경 또는 파손을 절대로 금한다.

라. 시공관리

- 1) 모든 제품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변경사항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 2) 모든 공사는 학교 여건을 고려해 세부작업 일정 및 소음, 먼지발생 방지를 위한 작업방법을 강구하고,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한다.

- 3) 현장관리는 관련법규에 따라 이행하고 해당분야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기술자를 선임하여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4) 공사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현장 공정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 5) 감독원이 지시하는 안전, 환경, 위생, 화재예방, 정리정돈, 공해방지 등의 현장관리상 보완해야 할 사항은 준수해야 한다.
- 6) 작업완료 후 주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각종 쓰레기를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에 운반 처리한다.
- 7) 공사기간에 나오는 폐자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공사 특기사항

가. 공통사항

- 1) 천장내부배관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시공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감독관의 확인하에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천장 마감재 높이는 FL+2,400 높이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 공사투입전 반드시 현장 실측할 것

나. 장비설치공사

- 1) 가스온수기 용량 : 급탕열량 46,000Kcal/h 이상 벽걸이형 제품으로 설치한다.
- 2) 배기팬 용량 : 벨트구동형 시로코팬, 풍량 32,000m³/h 이상, 정압 40mmaq 이상, 동력 15HP 이상의 KS 인증제품 또는 KS에서 정해진 효율 이상의 고효율 전동기를 적용한다.
- 3) 배기팬 설치시 장비패드 타설, 방진스프링패드를 포함한다.
- 4) 배기팬 1차 전원선 연결 및 제어판넬은 전기공정에서 별도 진행한다.

다. 위생설비공사

- 1) 급수, 급탕 배관은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프레스식)으로 시공한다.
- 2) 급수, 급탕 메인배관은 상부배관(천장내부) 시공을 기본으로 한다.
- 3) 급수, 급탕 메인배관은 1층의 기존 메인입상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시공한다. (기존배관 STS 40A로 분기되어 있음)
- 4) 주방기구별 급수, 급탕 공급배관 및 중간밸브의 설치위치는 첨부된 도면에 따라 정확한 위치와 높이로 시공한다.
- 5) 상부에서 내려오는 배관은 벽 또는 구조물에 지지대를 시공하여 견고하게 고정한다.
- 6) 공사범위
 - 급수, 급탕 메인배관 ~ 주방기구별 공급배관 및 중간밸브 설치 : 금회 계약업체 시공
 - 주방기구 설치 및 중간밸브 연결 : 주방기구업체 시공
- 7) 배관보온 시공은 메인배관 ~ 중간밸브 까지 하도록 한다.
 - 급수, 급탕배관 보온규격 (아티론보온재 / 20A 이하 : 20T / 32A 이상 : 25T)
- 8) 배수시설(배수배관, F.D, 그리스트랩) 설치공사는 견적에서 제외한다. (별도공사 시행)

라. 환기설비공사

- 1) 덕트재질은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으로 선정한다.
- 2) 덕트의 판 두께는 아래 기준을 따른다. (저압덕트 기준)

덕트 압력구분	저압덕트[mm]	고압 1, 2 덕트[mm]	관 두께 [mm]	
덕트의 지름	450 이하	200 이하	0.5	
	450 초과 750 이하	200 초과 600 이하	0.6	
	750 초과 1000 이하	600 초과 800 이하	0.8	
	1000 초과	800 초과 1000 이하	800 초과 1000 이하	1.0
		1000 초과	1000 초과	1.2

<참고자료-1>

3) 공사범위

- 주방기구별 후드 제작 및 설치 : 주방기구업체 시공
- 배기덕트 설치 및 후드 덕트 후렌지 연결 : 금회 계약업체 시공

4) 배기덕트는 1층 옥상에 설치되는 배기휀까지 연결하고, 이후 2층 옥상까지 연장하여 냄새가 배출되도록 시공한다.



<참고자료-2>

마. 가스설비공사

- 1) 주방기구별 가스공급배관 및 중간밸브의 설치위치는 첨부된 도면에 따라 정확한 위치와 높이로 시공한다.
- 2) 상부에서 내려오는 배관은 벽 또는 구조물에 지지대를 시공하여 견고하게 고정한다.
- 3) 가스배관 시공은 관계법규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준을 준수하여 진행한다.
- 4) 가스배관 시공은 주방기구 배치 후 배관 연결까지 포함한다.
- 5) 가스누설검지부, 제어부판넬 설치를 포함한다.
- 6) 가스시설공사와 관련하여 관련기관 인·허가 대행업무를 포함한다.



<참고자료-3>



<참고자료-4>

5. 안전 관리사항

가. 근로자 안전

1) 교내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전 근로자 안전모 안전화 각반 마스크 실내 출입시 코로나전염예방 반드시 착용
- 지정된 구역에서만 흡연가능
- 출근시 근로자 온도체크(매일 1회)실시 : 체온 37.5℃ 이상시 현장출입 금지

나. 현장 안전

- 1) 공사 중 발생한 모든 사고 화재 도난 부상 사망 기타 재해사고 등은 시공자가 책임 처리한다.
- 2) 시공자는 공사 중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 피해, 차량 및 통행인의 이동 방해, 분진 발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 3) 시공자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한 후 공사하여야 한다. 반드시 현장 주변으로 안전지대를 확보하고 공사구역에 대한 통행을 제한해야 한다.
- 4) 공사 시행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차량 및 인원 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고 사전에 충분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5) 항상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자재 정돈 상태를 점검 및 정돈하고, 현장내부는 항상 정리 정돈된 상태를 유지한다.
- 6) 모든 공사가 완료된 후의 현장 청소 및 이에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한다.

6. 견적조건

가. 본교에서 제공하는 설계도서(도면, 과업지시서 등)을 참고하여 현장실측을 실시하고, 물량과 단가를 표시한 내역서를 제출한다.

- 입찰공고기간 내 입찰참여 접수 완료한 업체에 한하여 설계도면 제공
- 물량산출 및 단가산정 잘못은 인정치 않으며, 이에 대한 설계변경은 없음
- 제공된 도면을 참고하되, 반드시 현장실측 및 현장여건을 확인 후 견적해야 함. 실측오류 및 현장 공사 여건 확인 미비에 따른 설계변경 없음. (지급된 도면은 견적목적용으로만 사용하며, 입찰완료 후에는 대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파기조치 한다.)
- 본 공사를 위한 과업지시서 및 도면은 서로 보완하며, 각각의 내용 중 표현의 불일치 부분 및 표현이 모호한 경우 또는 현장여건과 상이한 부분 등은 질의응답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여 명확한 공사 내용을 제시받아야 한다. 이의 제기없이 공사 중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결정에 따른 사양 및 방법으로 공사비 증가 없이 시공되어야 한다.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

나.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을 내역에 포함하며, 공사 후 정산한다.

- 정산과정에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미지급
- 공사 및 정산완료에 따라 공사비 지급이 완료된 후라도, 학교 감사과정에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금액으로 판정될 경우, 환수해야 함
-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약금액을 초과할 경우, 2019년 개정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하여 본교에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 범위 내에서 변경(증액)계약이 가능함. 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집행 전에 발주자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함.
- 간접비 정산은 본교 현장명으로 별도 가입된 내용만 인정

다. 공사 시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학교에서 규정한 주차료 납부 포함
(주차료: 1,000원/2시간, 2,000원/4시간, 3,000원/당일, 30,000원/월)

라. 공사기간 중 현장소장 1명 반드시 상주 할 것

7. 지급자재

- 가. 가설전기 및 가설용수 (가설전기 및 가설용수 시설비는 업체 부담)
- 나. 상기 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자재를 포함하여 견적
- 다. 기타 작업발판 등 모든 가설자재는 지급치 않으며 설치 및 해체, 정리는 일체 시공자 부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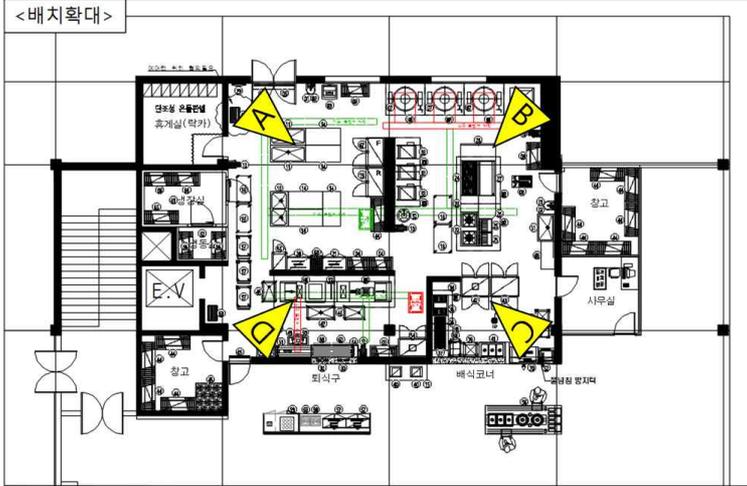
8. 질의응답

- 가. 입찰 관련 : 구매관재팀 이지희(031-219-2067)
- 나. 공사 관련(과업지시서 내용 관련 질의응답)
 - 질의 : 입찰공고일로부터 3일차 까지 이메일로만 접수 / hcm3843@ajou.ac.kr
 - 응답 : 전자입찰 2일전 18:00 까지 일괄 이메일로 공지

※ 첨부자료

1. 현장사진
2. 간접비 정산 확인서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4. 설계도면 (CAD도면 별도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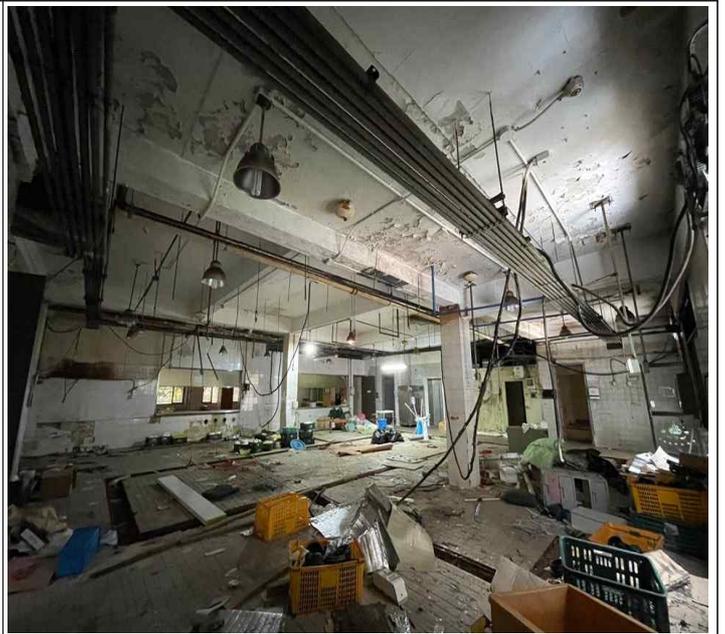
[첨부자료-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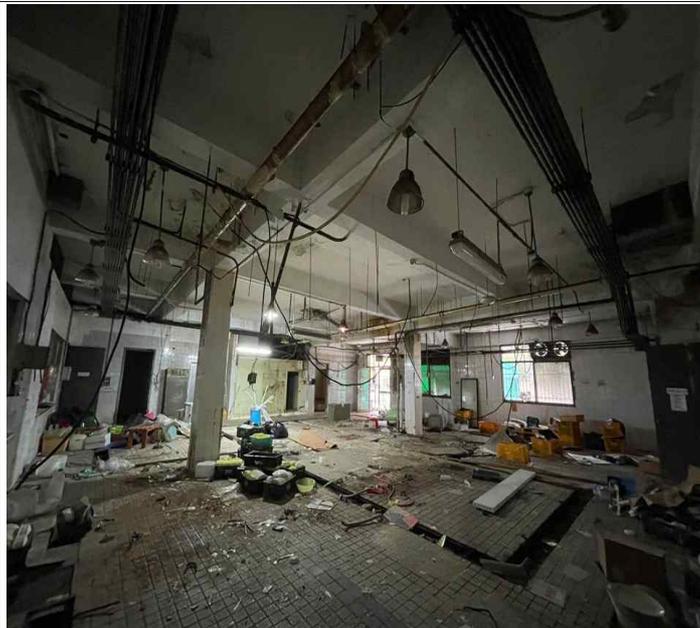
<전체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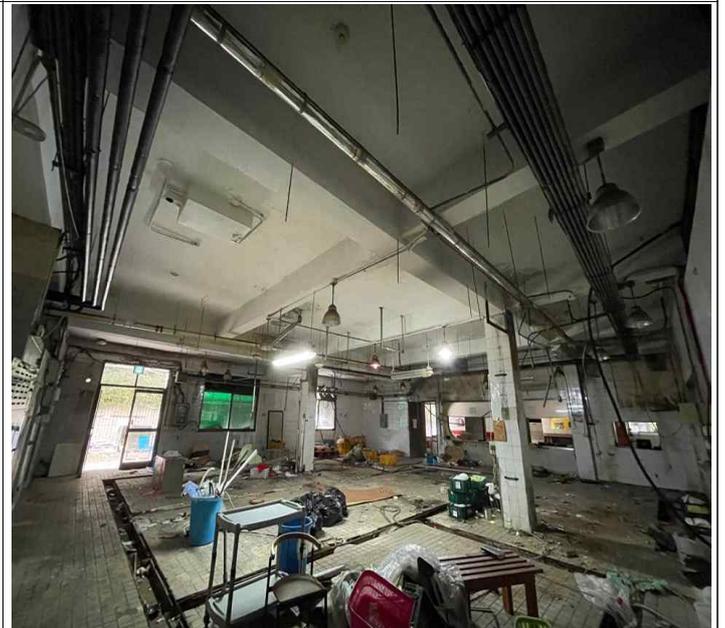
“A” 방향



“B” 방향



“C” 방향



“D” 방향

확 인 서

- 업체명 :
- 이 름 :
- 부서 및 직책 :
- 사무실 연락처 :
- 핸드폰 번호 :

“아주대학교 기숙사식당 1층 집단급식소(주방) 개선공사(기계)” 진행완료 후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는 사후정산하며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명기된 기준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발주처 내부기준”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기존 내역서에 명기된 금액 미만으로 집행될 경우 미지급하며, 초과하여 집행된 경우에는 초과 지급하지 않는다.

예외로 안전관리비 집행금액이 계약금액을 초과할 경우, 2019년 개정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하여 본교에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 범위 내에서 변경(증액)계약이 가능하다. 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집행 전에 발주자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1. 고용보험/산재보험

- 증빙서류 : 가입증명원 및 완납증명원(공사명 기재)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국민건강보험/노인요양보험/국민연금

- 증빙서류
 - 해당공단에서 발행된 개인별납입확인서
 - 분리사업장으로 신고된 것만 인정 : 납입확인서에 공사명 기재된 것
 - 사업자 부담분만 인정 : 납입확인서 금액의 1/2만 인정
 - 하도급업체도 동일한 기준적용
- 인정불가
 - 시공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였더라고 분리사업장(건설현장) 미신고로 인정불가

2) 고용보험/산재보험

- 적용기준 : 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증빙서류
 - 1) 인건비성 : 지급명세서 사본, 신분증 사본, 노임대장, 업무일지(날짜별 업무내용/시간),

날짜별 사진

- 2) 안전·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신고한 경우만 인정
- 3) 물품구매 : 세금계산서 사본, 이체확인증, 거래명세서 사본, 반입사진, 설치사진, 설치위치 등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현장배경 물품 반입 사진(전수), 근로자 실착용사진(지급 물량 = 근로자 사진), 착용 후 작업사진, 지급대장(대상자 서명포함) 등
 - 안전시설비: 설치 위치 표기 도면, 수량산출, 반입사진, 설치사진 등
- 4)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 계약서, 이체확인증, 교육자료, 교육사진 등
- 5)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계약서, 이체확인증, 재해예방 지도에 따른 증빙문서 등

○ 인정불가

- 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 해당하는 모든 내역
- 안전시설 및 인건비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면 절대 인정불가
- 신호수 : 유도·신호업무만을 전담하지 않은 경우, 현장 외부에서 차량통제를 위한 신호수
- 안전시설 : 현장 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닌 웬스 및 분진망 등

3. 환경보전비

- 적용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 증빙서류

- 인건비성 : 지급명세서 사본, 신분증 사본, 노임대장, 업무일지(날짜별 업무내용/시간), 날짜별 사진
- 물품구매, 환경시설물 설치에 따른 재료비 : 세금계산서 사본, 이체확인증, 영수증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구입물품 사진(전수), 작업 사진, 현장에 설치된 사진 등

○ 인정불가

- 현장청소 인건비, 가설사무실 청소인건비
- 단순 청소용품 : 마대, 마스크/장갑, 청소도구(빗자루, 쓰레받이, 집게, 삽 등)
- EGI 펜스(추락방지용)
- 부직포(일반용)
- 환경관리 전담인력 인건비
- 폐기물 처리비(별도내역으로 지급)

※ 공통 유의사항

- 1) 공사 착수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사용하며, 사용계획서 제출시 승인된 목록 이외 항목의 집행이 필요할 경우 사전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 2) 신용카드 사용 시에는 신용카드 영수증, 매출전표 등을 제출한다.
- 3) 전자세금계산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허위 작성하거나 준공 이후 변경발급 및 취소시 환수조치되며,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022. . .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p>1. 안전 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제7조제1항제1호 관련)</p>	<p>가.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경우(영 별표3 제46호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에 배치하는 안전관리자가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2)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영 제17조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실제 선임·신고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음(법상 의무 선임자 수를 초과하여 선임·신고한 경우, 도급인이 선임하였으나 하도급 업체에서 추가 선임·신고한 경우,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면서 추가 선임·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p>나.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공, 민원, 교통, 환경관리 등 다른 목적을 포함하는 등 아래 세목의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공사 도급내역서에 유도자 또는 신호자 인건비가 반영된 경우 나)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u>유도·신호업무만을 전담하지 않은 경우</u> 다)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업장 주변 교통정리, 민원 및 환경 관리 등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확·포장 공사 등에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 공사현장 진·출입로 등에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 통제를 위한 교통정리 신호수 등 <p>다. 안전·보건보조원의 인건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담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현장의 경우 2) 보조원이 안전·보건관리업무 외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3) 경비원, 청소원, 폐자재 처리원 등 산업안전·보건과 무관하거나 사무보조원(안전보건관리자의 사무를 보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p>2. 안전 시설비 등 (제7조제1항제2호 관련)</p>	<p>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시설물, 장치, 자재, 안내·주의·경고 표지 등과 공사 수행 도구·시설이 안전장치와 일체형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구입·수리 및 설치·해체 비용 등</p>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호 관련)	<p>가.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장치, 도구, 자재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 2) 각종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통로, 사다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발판, 안전통로, 안전계단 등과 같이 명칭에 관계없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시설들은 사용 불가 - 다만, 비계·통로·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틀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사다리, 통로의 낙하물방호선반 등은 사용 가능함 3) 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 4) 작업장 간 상호 연락, 작업 상황 파악 등 통신수단으로 활용되는 통신시설·설비 5)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운행 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방법 등의 목적을 가진 CCTV 등 감시용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CCTV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가능함 <p>나. 소음·환경관련 민원예방, 교통통제 등을 위한 각종 시설물, 표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현장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시설, 분진망 등 먼지·분진 비산 방지시설 등 2) 도로 확·포장공사, 관로공사, 도심지 공사 등에서 공사차량 외의 차량유도, 안내·주의·경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안전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안내·경고 표지판, 차량유도등·점멸등, 라바콘, 현장경계휀스, PE 드럼 등 <p>다. 기계·기구 등과 일체형 안전장치의 구입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 시 수리 및 교체비용은 사용 가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톱날과 일체식으로 제작된 목재가공용 둥근톱의 톱날접촉예방장치, 플러그와 접지 시설이 일체식으로 제작된 접지형플러그 등 2) 공사수행용 시설과 일체형인 안전시설 <p>라. 동일 시공업체 소속의 타 현장에서 사용한 안전시설물을 전용하여 사용할 때의 자재비(운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p>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제7조제1항제3)	<p>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 근로자 식별, 복리·후생적 근무여건 개선·향상, 사기 진작, 원활한 공사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p> <p>가.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현장에서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현장관계자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업</p>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호 관련)	<p>무용 기기</p> <p>나.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p> <p>1) 작업복, 방한복, 방한장갑, 면장갑, 코팅장갑 등</p> <p>※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미세먼지 마스크, 쿨토시, 아이스조끼, 핫팩, 발열조끼 등은 사용 가능함</p> <p>2) 감리원이나 외부에서 방문하는 인사에게 지급하는 보호구</p>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제7조제1항제4호 관련)	<p>다른 법 적용사항이거나 건축물 등의 구조안전, 품질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다음과 같은 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p> <p>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가설구조물 등의 구조검토, 안전점검 및 검사, 차량계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정기·구조변경·수시·확인검사 등</p> <p>나.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대행 등</p> <p>다. 「환경법」에 따른 외부 환경 소음 및 분진 측정 등</p> <p>라. 민원 처리 목적의 소음 및 분진 측정 등 소요비용</p> <p>마. 매설물 탐지, 계측, 지하수 개발, 지질조사, 구조안전검토 비용 등 공사 수행 또는 건축물 등의 안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p> <p>바. 공사도급내역서에 포함된 진단비용</p> <p>사. 안전순찰차량(자전거, 오토바이를 포함한다) 구입·임차 비용</p> <p>※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또한 사용할 수 없음</p>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제7조제1항제5호 관련)	<p>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와 무관한 다음과 같은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p> <p>가. 해당 현장과 별개 지역의 장소에 설치하는 교육장의 설치·해체·운영비용</p> <p>※ 다만, 교육장소 부족, 교육환경 열악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현장 내에 교육장 설치 등이 곤란하여 현장 인근지역의 교육장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가능</p> <p>나. 교육장 대지 구입비용</p> <p>다. 교육장 운영과 관련이 없는 태극기, 회사기, 전화기, 냉장고 등 비품 구입비</p> <p>라.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다음과 같은 포상금(품)</p> <p>1) 일정 인원에 대한 할당 또는 순번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p> <p>2) 단순히 근로자가 일정기간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하는 경우</p> <p>3) 무재해 달성만을 이유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p> <p>4)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무관하게 관리사원 등 특정 근로</p>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p>자,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p> <p>마. 근로자 재해예방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안전정보 교류 및 자료수집 등에 소요되는 비용</p> <p>1) 신문 구독 비용</p> <p>※ 다만, 안전보건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정보를 60% 이상 제공하는 간행물 구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가능</p> <p>2) 안전관리 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비용</p> <p>3)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의 참가회비가 적립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p> <p>바.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안전보건 행사비, 안전기원제 행사비</p> <p>1) 현장 외부에서 진행하는 안전기원제</p> <p>2) 사회통념상 과도하게 지급되는 의식 행사비(기도비용 등을 말한다)</p> <p>3) 준공식 등 무재해 기원과 관계없는 행사</p> <p>4) 산업안전보건의식 고취와 무관한 회식비</p> <p>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교육비용</p>
<p>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제7조제1항제6호 관련)</p>	<p>근무여건 개선, 복리·후생 증진 등의 목적을 가지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p> <p>가. 복리후생 등 목적의 시설·기구·약품 등</p> <p>1) 간식·중식 등 휴식 시간에 사용하는 휴게시설, 탈의실, 이동식 화장실, 세면·샤워시설</p> <p>※ 분진·유해물질사용·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 설치하는 탈의실, 세면·샤워시설 설치비용은 사용 가능</p> <p>2) 근로자를 위한 급수시설, 정수기·제빙기, 자외선차단용품 (로션, 토시 등을 말한다)</p> <p>※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및 근로자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비, 6~10월에 사용하는 제빙기 임대비용은 사용 가능</p> <p>3) 흡서·흡한기에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보양식·보약 구입 비용</p> <p>※ 작업 중 흡한·흡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설치·해체·유지비용은 사용 가능</p> <p>4)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 및 운동 기구 등</p> <p>5)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 암 검사비, 국민건강보험 제공비용 등</p> <p>※ 다만, 해열제, 소화제 등 구급약품 및 구급용구 등의 구입비용은 사용 가능</p>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나. 파상풍, 독감 등 예방을 위한 접종 및 약품(신종플루 예방 접종 비용을 포함한다) 다. 기숙사 또는 현장사무실 내의 휴게시설 설치·해체·유지 비, 기숙사 방역 및 소독·방충비용 라. 다른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건강검진 비용 등
7. 건설재해예 방기술지도 비	-
8. 본사 사용 비 (제7조제1항제6 호 관련)	가. 본사에 제7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만을 전담하 는 부서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나. 전담부서에 소속된 직원이 안전보건관리 외의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아주대학교 기숙사식당 1층 집단급식소(주방) 개선공사(기계)’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2. .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아주대학교 시설팀 귀하